

제 834 호
1981. 4. 15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505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3
제 1506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8
◎ 규 칙		
제 229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기자제도입심의회규칙	8
◎ 훈 령		
제 546 호 :	서울특별시시민복지기탁금관리규정중개정규정	10
◎ 고 시		
제 116 호 :	도시계획변경(도로)결정고시	11
제 117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12
제 118 호 :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선비)시행허가	12

<이편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447

제 119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창사, 도로) 결정 (지적승인포함) 및 변경.....	14
제 12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및 하천) 결정및 변경 과지적승인.....	15
제 121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6
제 122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17
제 12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18
제 12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추가)	18
제 12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20
제 126 호 :	소매상의연쇄화사업매장규모변경고시.....	20
제 127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21
제 128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 지적승인.....	22
제 129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22
제 130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지적승인.....	23

◎ 공 고

제 100 호 :	서울아수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인가.....	24
제 101 호 :	서울강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24
제 10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5
제 10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6
제 104 호 :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30
제 105 호 :	환지계획 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 공고.....	31
제 106 호 :	K 8 표시 허가 취소 처분 공고.....	31
제 107 호 :	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 행정 처분.....	32
제 10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32
제 109 호 :	도시계획사업 (구토공단종합복지관) 실시계획 공람공고.....	33
제 111 호 :	K 8 표시 정지 처분 공고.....	36
제 113 호 :	건설업 (조경식재및 시설물 단종공사) 면허 취소 공고.....	36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4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05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 차)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이하 "공원"이라 한다) 의 설치, 관리, 입장료 등의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조성의 경우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공원면적을 10,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시장이 법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수탁사의 자격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리행정청의 공원조성자격) 시장은 다음 각호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원조성능력 있는자
2. 공원조성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공원조성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5 조 (공원입장료등) ① 공원입장료는 (별표 1) 과 같이한다.

②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법시행령 제 11 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공원에 한한다.

제 6 조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 7 조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

이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를 징수한다.

제 8 조 (공원점용료) 공원점용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 9 조 (요금의 징수방법등) ①공원 입장료는 입장시, 공원시설 사용료는 시설이용시, 공원점용료는 점용 허가시에 징수한다.

②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의 징수는 그 성질에 따라 년액, 월액등의 적합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된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 허가면적보다 과소하여 이의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0 조 (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의 자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구역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 또는 공원관리청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등을 설치하는 경우
2. 민족적의식 및 종교의식등 이와 유사한 행사를 위하여 점용할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 조 (관리위탁등의 기간) ①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공원점용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②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관리 및 점용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①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 조 (전대등의 제한)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되는 제반권능은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 14 조 (원상회복) 시장은 법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 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5 조 (수수료) ①법 및 이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서(별표 5)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공원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 491호, 67.11.22)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공원으로 본다.

<별표 1> 공 원 입 장 료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일 반 공 원	대인 1회당 소인 1회당	100 원 60 원	○ 단체는 기본요율의 30%범위내에서 시장이 인하 조정할 수 있음. ○ 조기산책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징수함.
어 린 이 대 공 원	대인 1회당 소인 1회당	300 원 100 원	

주) 어린이 : 국민학교 학생 및 만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
 (소인) (다만, 유희 및 운동시설사용의 경우는 만 4세이상 12세이하의자)
 학생 : 정복을 착용하거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의 학생
 어 른 : 어린이, 학생, 군인 및 만 6세이하의 자 이외의 자
 대 인 : 어른 및 학생
 단 체 : 어린이, 학생, 군인 또는 어른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함.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운동장 사용	1 회 당	평당 10 원	
상시 영리행위 (사진촬영)	1 인 1 년 당	100,000 원	
영 화 촬 영	주간 1 회 당	50,000 원	야간은 주간의 2 배로 함
녹 화	1 시 간	10,000 원	
	초과시간당	5,000 원	
악기음악당사용	주간 1 회 당	30,000 원	야간은 주간의 2 배로 함
남 산 공 원	어른 1 회 당	150 원	
식물원 입장	학생 1 회 당	100 원	
	어린이 1 회 당	50 원	
남 산 공 원	(1회통과당)		
차 량 영 장	버스·대형 화물	600 원	
	승용·마이크로		
	버스·소형 화물	400 원	
	2 륜	200 원	
남 산 전 망 대	대인 1 회 당	1,000 원	
입 장	소인 1 회 당	700 원	
남 산 케이블카	대 인 편 도	500 원	○ 왕복은 편도의 50%가산 ○ 단체는 해당액의 30%범위 내에서 인하함.
	소 인 편 도	300 원	
	통근의 경우 1 개월 당	3,000 원	
유 회 시 설 은 동 시 설	-	인근시설사용 료의 90%이내 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함.	○ 어린이수영장은 관리운영비 범위내에서 정함.

종		단위기준	금	액
운동시설	위탁료	영업목적지 영업목적 이외	전체수입액의 10/100 당해재산가액의 1/100	
유희시설	위탁료	-	전체수입액의 10/100	
기타시설	위탁료	년 액	인근임대료추정액의 100/100	

점 용 대 상		점 용 료
전기통신설비,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 점용	수도관, 하수도관, 개스관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 점용	인근 토지가격의 6/100 인근 토지가격의 1/100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 점용	행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 사한 점용	인근 토지가격의 6/100을 일별로 산정 산지근처의 시가액에서 채굴 및 운반비 를 제외한 금액의 70/100

구	분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허가 및 위탁신청		200 미만 200 이상 300 이상	3,000 원 5,000 원 10,000 원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함.
점용허가신청		-	5,000 원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 4. 1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 창 갑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06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수료) "영"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 할 때에는 다음구분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수입증서로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지부등록에 있어서는 6,000 원
- 2. 지부등록에 관한 변경등록에 있어서는 2,000 원
- 3. 영제 11조에 의한 등록의 경우는 영제 12조제 1항 각호에 정한 수수료

제 3 조 (반환금지) 등록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는 파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않는다.

부 칙 (8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4.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 창 갑 인

○ 교육규칙 제 229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규칙

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이하 "본청"이라한다)와 그 산하기관, 각급학교의 외국산 기자재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한다)의 구매, 도입, 임차등(국내구매및임차를 포함하여 이하 "도입"이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수요기관) 다음 기관이 외국산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구매 또는 구매요청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p>1. 본청 및 사업소</p> <p>2. 교육구청</p> <p>3. 국·공립 자급학교</p> <p>4. 외국차관, 국고 및 시비 보조 대상인 사립학교(차관, 국고, 시비로 도입되는 기자재에 한 한다)</p> <p>제3조(사전검토) 수요기관이 외국산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며,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요청서에 그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요청 한다.</p> <p>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자재 구매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구매의 규모 및 품목별 적합성 3. 타기관 보유 기자재 전용, 공동사용 가능여부 및 국산품으로 대체구입가능여부 4. 기자재 운용 예산, 관련기술 및 요원의 확보 대책 강구 여부 5. 고장시수리, 대체등에 관한 사후관리책 완비 여부 6. 기자재의 생산국, 규격, 성능 등의 적절 여부 7. 계약방법, 입찰가격 기준등의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8. 수요기관 기자재의 활용증대를 위한 관리, 공동사용, 관리전환 등에 관한 종합 조정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p>	<p>위원장 1인과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무국장 2. 관리국장 3. 초등교육과장 4. 중등교육과장 5. 실업교육과장 6. 재무과장 7. 시설과장 8. 기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심의안건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2인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거나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p>
--	--

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위원회의 신의에앞서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심의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교육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 일반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 교육구청 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는 실업교육과에서, 일반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는 재교육과에서, 교육구청 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는 해당 교육구청에서 각각 운영한다.

제 10 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안전이 있을때 마다 기자재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기자재 수요기관을 감독하는 주무과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3명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에 따라 그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과장과 교육구청장이 된다.

제 11 조 (수당) 본청 및 교육구청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 12 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실업교육과의 종업교육계장이 된다.

제 13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8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탁금관리규정 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훈령 제 546 호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탁금관리 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탁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 1항에 의한 금고의 명칭은 본청은 "서울특별시 개나리 상조금고"라 하고 각구는 "○○구 개나리 상조금고"라 한다.

제 3조 제 4호 및 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활근로대응 물우단체

10.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제 9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기탁금 취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매년 기탁금 취급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조 제 1항중 "출장소는 총무과장", 제 3조 제 1항중 "출장소", 제 4조중 "출장소 총무과", 제 9조 제 3항중

관호안의 "출장소"를 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 호

도시계획변경(도로)결정고시

주택신설추진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산 1-1 외 15 필지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아파트 및 부대시설)하고 동법 제 3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4.9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복원	면적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3	1	6.0 M	143.0 M	길동 55-4	길동산 1-1
폐지	"	3	1	6.0	143.0	"	"
기정	"	3	2	6.0	96.0	길동산 1-2	명일동산 69-1
폐지	"	3	2	6.0	96.0	"	"
기정	"	3	4	6.0	53.0	길동 55-4	길동 58
폐지	"	3	4	6.0	53.0	"	"
기정	"	3	5	4.0	93.0	길동 58	길동산 1-2
폐지	"	3	5	5.0	93.0	"	"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6	6.0 M	37.0 M	길동산 1-2	길동산 1-2
폐지	"	3	6	6.0	37.0	"	"
기정	"	3	7	6.0	186.0	길동산 1-1	명일동산 69-1
폐지	"	3	7	6.0	186.0	"	"
신설	"	3	3	6.0	209.0	길동 54	길동산 1-2

◎ 서울특별시고시제 117 호

주택개량유위 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제 12 호 (80.1.16) 로 공람한바 있는 응암지구 일부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 7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다.

2. 고시내용

가. 관리처분계획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여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건축국 재개발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주택과에 비치 열람함.

1981.4.1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75 호 (80.11.7) 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시흥군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4.9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 610- 구로구 시흥동 561 의 2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
- 3) 사업시행규모 : 철탑 20 기. 연장 3,948 M
- 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1 한국전력추진회사 사장 김영준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81.12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다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154 KV시흥송전선철탑)

철탑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	면적 적(평)	소 유 자		토지수용법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시흥 소하읍망명리	610	건	311	35	한국전력주식회사		
2	" " "	603	"	793	23	영등.영등포 2가 398	조순단	
3	" " "	산 143	임	10,612	34	울산.실정 700-4	이기봉	
4	" " 노은사리	산 2	"	8,597	14	영등.당산 3가 2	이인형	
5	" " 하안리	산 81	"	7,140	14	양수진건 팔현리	남양동 씨종중 (익원 군파)	
6	" " "	산 77-1	"	6,149	14	김포 화성 마곡 634	이의익	
	" " "					" 석한 315	이의열	
7	" " "	산 146-2	"	4,860	18	시흥.소하 하안 478	경일준	
8	" " 소하리	산 21	"	2,281	20	용산 한남 774-2	설원량	
9	" " "	산 24	"	4,959	17	" " "	"	
10	" " "	산 48-1	"	56,926	32	수원.매산로 3가 94-37	최종선	
11	" " "	"	"	"	"			
12	" " "	298-5	담	1,322	34	시흥.소하 소하 324	김덕천	

38-14 제 834 호 시 보 1981.4.15

철합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	면적 (평)	소 유 자		토지수용법제 4 조건3항의관계 안주소 설명
						주 소	성 명	
13	시흥·소하·소하	283-2	담	5,524	18	시흥·소하·소하 392	김배중	
14	" " "	423	"	6,651	17	" " " 324	김종익	
15	" " "	471-2	"	4,334	19	영등포 시흥 210	양경석	
16	" " "	485	"	1,426	20	관악 대방 389-21	박경운	
17	" " "	500	"	3,940	18	시흥소하 소하 165	김주택	
18	영등포·시흥	576-1	임	906	55	국 유 지		
19	시흥·소하·소하	7-2	잡	13,850	55	"		
20	영등포·시흥	561-2	대	6,765	38.1	한국전력주식회사		

○ 서울특별시고시 제 119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도로)

결정 (지적승인포함) 및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도로) 을 다음과 같이 결정 (지적승인 포함) 및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귀임 사

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경기도 시흥군청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4.9

서울특별시장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용의청사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하안리 740 일대	58,300 ㎡	지적승인포함

0.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M	310M	경기도시용군 소하읍하안리 784	경기도시용군 소하읍하안리 736	
변경	▪	▪	▪	▪	▪	▪	폐지
기정	▪	▪	▪	200M	▪ 791	▪ 775	
변경	▪	▪	▪	▪	▪	▪	폐지

0. 별첨도면표시와갈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제 12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및 하천)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및 하천)을 도시계획법제 12조및 동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463호(79. 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및 변경과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와 하천에 대하여는 치수과에 비치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4. 11.

서울특별시장

0.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149	20m	300m	중로 1-135	상동고북단	
변경	▪	▪	▪	▪	3,290	▪	마장교(대로 2-38)	중 2-19를 흡수노선 연장(지적 승인포함)

38-16 제 834 호 시 보 1981.4.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	2	19	15	4,730	하왕십리동 9호광장	청계천남측 (대 1 - 16)	폐지후일부 중 1-149로 흡수 결정
변경	■	■	■	■	■	■	■	
신설	■	3		12	150	한강로 2가 16	한강로 2가 16	

0.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0. 하천조서

구분	시설명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하천 (홍제천)	65 m 84 m	11,950 m	평창동 65	성산동한강 합류점	유진상가 - 홍연교간 일부조정
변경	■	35 - 84	■	■	■	

0.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거 서
울특별시 도봉구 중계동 106-1 외
16 필지 상에 민영주택 (단독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
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건축과에 비
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인정 조서

사업의종류	사업자	사업예정지	건설규모	대지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민영주택 건설사업	한미연합사 무주택장병	서울특별시 도봉구	단독주택 75세대	22452㎡ 단지	1,269,828 천원	8.4 82.4

사업의종류	사업자	사업예정지	전설규모	대지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계획승인	초합장 정형철	중계동 106-1외 16필지		20982.5㎡ 단지의 도로 1469.5㎡		

나) 도로 변경 조서

구분	종류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변경	소로	2	8	69 90	중계동 85-3	중계동 94-14	일부위치변경
기정 변경	소로	2	8	95 102	중계동 94-1	중계동 105-8	일부위치년경

다) 토지 세목 조서

위 치	지 목	전 입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중계동 106-1 외 16필지	전 답	20982.5㎡	한나연합사 무주택장방조합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2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적승인

- 서울특별시 고시제 86호(81.3.26)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

시계획법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호(79.12.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부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13.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실 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내버스)	구로구 가리봉동 535-4일대	7,280㎡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3 호

도시 계획 시설(도로) 변경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 호 (81. 3.27) 로 시설 변경 결정 고시 된 성동구 관내 옥수동 429 번지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

10)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4. 13.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 계획 시설(도로) 변경 지적 승인

구분	도로류별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 정	소로 2 류	8 M	40 M 옥수동 429-4	옥수동 430-7	폐 지 폭원축소 및 위치변경
변 경	소로 3 류	6 M	30 M "	" 429-3	

나. 변경 결정 도면 :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

도시 계획 사업(학교) 실시 계획인가(추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1 호 (79.11.5) 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 계획 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 10)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6 호 (80.10.14) 로 도시 계획 사업(학교) 실시 계획 인가 된 내용 중 아대사항을 추가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국 도시 계획 1 과와 시흥군 건설과 및 경기

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4. 13.

서울특별시 장

- 1 - 6. 사업 시행지, 위치 및 계획 평면도: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6 호 (80.10.14) 와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소재지	지 번	지 류	지 적	시행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시 용 군 소 하 용 철 산 리	산 39-1	임 야	1,980 평	1,013 평	서울시서대문구연희동 117-8	이 민 택
	산 39-2	"	6,150	2,512	철산리 56-234	이 중 환
	산 30-3	"	6,570	2,859	철산리 산 39	식 산 조 씨 철 원 공 용 형 파 중 원 회
					철산리 56-234	김 정 화
					광명리 158-58	김 순 내
					광명리 273-43	김 한 구
					동대문구 제기동 114-23	장 인 환
	산 39-9	임 야	2,400	955	철산리 39-4	조 건 근
	산 41	묘	2,520	758		시 용 군
	224-1	임 야	2,904	813	철산리 50-206	김 혼 달
	221	건	604	125	서울 마포구 창전동 430	김 영 선
	222	건	680	13	철산리 467-172	고 주 봉
	223	건	189	36	철산리 173	홍 집 녹
	224	건	447	447	철산리 175	여 용 민 씨 시 홍 파 종 중
				영동포구 신길동 238-17	민 병 일	
225	건	452		도봉구 창동 688-8	민 병 이	
588	구 거		114		국 유 지	
계				9,750 평		

제 834 호

1981.4.15 38-19

○서울특별시고시 12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9 호(79.4.19)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

의 권한위임 규정에 위거 지적승인 하겠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4.14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별	목원	번호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20㎡	155	1,200㎡	공향동	개화동	중1-155 종점부근
변경	"	"	"	"	"	"	"	가격정리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26 호

소매상의연쇄화사업매장
규모변경고시

서울특별시 소매상의 연쇄점 매
장 규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한다.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중소상인 연쇄점 매장규모	7 명 이상	5 명 이상

1981.4.

서울특별시장

<p>○서울특별시고시제 127호</p> <p>도시계획시설(하수도)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전 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p>	<p>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4.15 서울특별시장</p>
--	---

구분	시설명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하수도	0.5m	50m	강서구등촌동 195	강서구등촌동 196-9	
		1.0	210	등촌동 191-101	등촌동 185-2	
		1.2	110	등촌동 185-2	등촌동 185-17	
		1.7	115	화곡동 203-6	화곡동 125-10	
		1.2	10	화곡동 125-10	화곡동 125-11	
		1.0	147.5	화곡동 125-11	화곡동 128-4	
		0.5	140	화곡동 362-3	화곡동 112-2	
		0.7	570	화곡동 327-8	화곡동 261-6	
		0.7	160	화곡동 327-50	화곡동 323-15	
		1.2	170	신정동산 35	신정동 517-6	
		1.4	120	신정동 517-6	신정동 530-2	
		1.7	241	등촌동 112-4	등촌동 419-4	
		1.4	180	등촌동 432-3	등촌동 411-3	
		1.0	400	방화동 611-124	공향동 3-5	
		1.0	71	내발산 507	내발동 503-1	
		2.7	110	목동 404-2	목동 404-2	
		2.7	650	신정동 119-1	신정동 130-88	
3-4.5	257	신정동 25-2 (재)	신정동 283-2			

◎ 서울특별시고시제 128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2.

10)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4.15

서울특별시장

가. 보존지구 지적승인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강서구 방화, 개화, 화곡, 등촌, 신월, 공항가양, 내발산, 외발산, 마곡동, 부천시 고강동일대	6,550,00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9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9 호 (81.4.7) 및 제 110 호 (81.4.7)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규정과 건설

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4.1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중 학교	은평구불광동 산 112 일대	13,074 (3,955 평)	
"	"	" 신사동 산 80 일대	8,793 (2,660 평)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국민학교	은평구 녹번동 175 일대	10,314 (3,120'')	
"	"	" 신사동산 103 일대	11,659 (3,530'')	
"	"	" 신사동산 55 일대	9,484 (2,869'')	
"	"	" 대조동산 7-2 일대	9,296 (2,812'')	

※ 별첨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0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107 호 (81.4.6) 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 와 동대문구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4.17

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조서

구분	시설명	시장명칭	위 치	대지면적	건축계획 (세부시설)
신설	소매시장 (농산물·특 용작물전 용)	경동시장	동대문구 제기동 1019 번기 주변 일대	1,530.34 평	지하 2 층 : 1,377.3 평 지하 1 층 : 1,377.3 " " 지상 1 층 : 762.3 평 지상 2 층 : 762.3 " " 지상 3 층 : 762.3 " " 합 계 : 5,041.5 평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 장	기 점	총 계	비고
기정	소로	2	8	45	동대문구 제기동 1015	동대문구 제기동 1018	
변경	중로	2	15	45	"	"	확관
기정	소로	2	8	118	동대문구 제기 1019	동대문·제기 1044	

구분	등급	류별	목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중로	3	12	118	동대문·계기 1019	동대문·계기 1044	확장
기정	소로	2	8	90	동대문구 계기동 1019	동대문구 계기동 1021	
변경	"	1	10	90	"	"	확장
기정	"	2	8	88	동대문·계기 849	동대문·계기 849	
폐지	"	2	"	"	"	"	

공 고

○ 서울 특별시 공고제 100 호

서울이수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

건설부고시 제 343 호 (79.9.21) 및 제 311 호 (80.10.24) 로 이수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된 이수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1.4. .

서울 특별시 장

1. 사업명 : 서울이수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37 일대
3. 시행면적 : 76,608 평 (23,174 평)

4. 시행자 : 이수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5. 시행기간 : 1981.4. (인가일) - 1983 12.31.

6.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1210 번지
7. 기타 : 관계도서는 이수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관계도서생략)

○ 서울 특별시 공고제 101 호

서울강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50 호 (80.5.20) 및 제 387 호 (80.11.18) 로 강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된 강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1.4. .

서울 특별시 장

- 1. 사업명 : 서울강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각일부
- 3. 시행면적 : 363,636㎡ (110,000 평)
- 4. 시행자 : 서울특별시
- 5. 시행기간 : 1981.4 (인가일) - 1982.
12.13.
- 6. 기타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 (관계도서는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2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 2948 호 (66.2.17) 에
의한 시설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 120
호 (73.7.16) 로 지적고시된 영등포구
시행 신길광장-구대방천간 도로정비공
사구간내에 저촉편입되는 토지의 도시
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관음한다.
-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
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

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1.4. .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 1. 사업장위치 : 영등포구 신길 5 동
시점 : 영등포구 신길 5 동 426 번
지앞
종점 : 영등포구 대림 2 동 414 번
지앞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길광장-
구 대방천간 도로정비공사
- 3. 사업의 규모 : 폭 : 25 미터
연장 : 350 미터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1981
10.31
- 6. 사용 도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다음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 다음
- 8.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토목과에 문의할 것.

토 지 존 서

공시명 : 신길광장 - 구 대방천간 도로정비공사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412-21	대	4.0㎡	종로구 송인동 7-19	최배삼외 1인
"	412-20	"	1.0	"	"
"	414-35	"	10.0	강서구 동촌동 315-5	최창현
"	414- 4	"	17.0	" 199-146	김문학
"	414-33	"	20.0	대방동 223	임수암
"	414-13	답	400	"	임수암
"	438- 1	도로	202.0	대방동 222	정유현
"	435-23	대	66.0	여의동장미 APT. A 803.1 -144	신용태
"	435- 6	"	43.0	"	신용태
"	435- 2	"	37.0	인천·남구주안 1동 196-9	이장재
"	433-74	답	1,123.0	신길동 1669	빈대길
"	433-76	"	476.0	"	빈대길
"	432- 5	"	17.0	"	빈대길
"	429-10	"	79.0	"	빈대길
계	14 필		2,495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2493 호(66.6.21) 및 서울특별시 변경고시 제 291 호(79.6.29)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대로 3류 47 호선인 우마로 개설공사 410 구간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3 호(78.12.21)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

- 인된 중류 2류 제 82 호선인 우마로와 연결되는 도로 250 미터구간내 저축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져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 1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부하고져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함.

3.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게시판
 나. 공고기간 : 81.4.11-81.4.25
 1981. 4. .

서울특별시

- 공 랑 개 요 -

1. 사업시행지 : 면목동 402번지~
 면목동 1084번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우마로(망

- 우로-어린이대공원 후문간)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 25미터 연장 : 410미터
 폭 : 15미터 연장 : 250미터
 4.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82.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 다음
 7. 사용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우마로(면목동 494 - 536) 보상구간

공사구간 총평수			수용평수		비 고
대	30 필지	2,710.90㎡	30 필지	2,710.90㎡	시유지 5/1,103 시유지 2/ 145.40 국유지 13/1,467
입야	4 "	1,493	4 "	1,493	
도로	1 "	25	1 "	25	
건	12 "	2,886	7 "	1,783	
추기	5 "	1,612.40			
계	52 "	8,727.30㎡ (2,639.99명)	42	6,011.90㎡ (3,818.69명)	10/2,715.40㎡
건물	18동	지상 275.38 지하 17.22 계 292.60명			

토 지 조 서

순위	당초지번	수용지번	지목	수용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면목동 442-1	면목동 442-1	대	07.6㎡	동대문구면목동 442-1	김영준
2	" 442-2	" 442-2	"	100.8"	" " 442-2	이정기

순위	당초지번	수용지번	지목	수용지적	소 유 자	
					주소	성명
3	면목동 442-3	면목동 442-3	대	107.1	성북구정농동산 87-1	김순일
4	" 442-4	" 442-9	"	45 "	동대문구면목동 442-4	박춘재
5	" 442-5	" 442-5	"	141.8 "	" " 442-5	조창규
6	" 469-1	" 469-1	"	133.6 "	" " 469-1	최용
7	" 469-7	" 469-7	"	99.2 "	" " 469-7	박용예
8	" 469-6	" 469-6	"	165.3 "	" " 379-20	장영선의
9	" 469-2	" 469-2	"	83.6 "	종로구신문로 2가 1-127	김승동
10	" 469-5	" 469-5	"	97.8 "	동대문구면목동 469-5	김효남
11	" 505-4	" 505-22	"	21.5 "	" " 505-4	박용식
12	" 505-5	" 505-5	"	46.3 "	" " 505-5	김기환
13	" 505-6	" 505-6	"	69.8 "	" " 505-6	최덕재
14	" 506-11	" 506-11	"	65.1 "	경북예천 풍양귀망리 189	이동희
15	" 507-2	" 507-19	"	60 "	동대문구면목동 55-10	서인근
16	" 507-11	" 507-22	"	18 "	" " 507-11	정병업
17	" 507-3	" 507-20	전	364 "	" " 1148	서인근
18	" 507-14	" 507-14	대	131 "	" " 507-14	이봉재
19	" 507-15	" 507-15	"	88 "	" " 507-15	유영근
20	" 507-16	" 507-16	"	83 "	" " 507-16	박병수
21	" 507-18	" 507-18	"	144 "	" " 1148	서인근
22	" 1082-2	" 1082-8	"	138 "	성북구정농동 260-39	최준희
23	" 1082-6	" 1082-10	"	59 "	동대문구청량리동 522	정임홍
24	" 1082-5	" 1082-5	"	102 "	면목동 1082-5	서병국
25	" 1082-4	" 1082-4	"	89 "	성북구정농동 260-39	최준희
26	" 1082-1	" 1082-12	"	151 "	성북구정농동 260-39	"
27	" 523-2	" 523-18	"	27 "	동대문구면목동 523	김승우
28	" 523-3	" 523-19	임야	2 "	" " "	"
29	" 1084-12	" 1084-32	도로	25 "	" " "	김시완
30	" 1084-13	" 1084-33	전	305 "	" " "	"
31	" 523-6	" 523-6	임야	167 "	" " "	김승우

구	당초지번	수용지번	지목	수용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명동 523-11	523-11	입야	142	동대문구민목동 523	김증우
2	" 524-9	524-9	전	763	" " "	김식환
3	" 1086-29	1086-29	"	40	" " "	"
4	" 1089-4	1089-4	"	272	" " "	"
5	" 1090-10	1090-14	대	127	" " 1090-1	최영건의1
6	" 536-1	536-16	"	55	" " 536-1	이규순
7	" 1110-10	1110-10	전	10	" 휘경동 192-	박도현
8	" 1082-3	1082-11	대	35	성북구정릉동 260-39	최준희
9	" 1086-33	1086-33	전	23	동대문구민목동 523	김시완
10	" 523-1	523-1	입야	1182	" " "	김증우
11	" 442-6	442-6	대	139.5	" " 442-6	하성운
12	" 459-4	459-8	구거	39		서울특별시
13	" 469-3	469-3	"	106.4		"
14	" 1091-1	1091-1	전	258		"
15	" 1110-12	1110-25	"	19		"
16	" 1110-2	1110-2	"	545		"
17	" 1110-24	1110-24	"	175		"
18	" 1110-23	1110-23	"	106		"
19	" 1326-2	1326-79	구거	779		국
20	" 1326-10	1326-82	"	629		"
21	" 1326-85	1326-86	"	59		"

건물조서

구	소재지	구조	신축년월일	총평수	수용평수	소유자	
						주소	성명
1	명동 442-1	세반부벽 세벽와습	68.3.29	9.83	9.83	동대문구민목동 442-1	김영준
2	" 442-2	"	68.4.2	14.25	14.25	" " 442-2	이정기
3	" 442-3	"	68.3.29	9.88	9.88	성북구정릉동 442-3	김순인
4	" 442-4	연방 와목 조개	69.11.19	① 22.10 ② 22.10	1층 8.92 2층 8.92	포천군영등영정리 30:	박대화

순위	소재지	구조	건축년월일	총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5	442-5	외국인 와유 조계	69.11.319	①20.50명 ②16	①20.50명 ②16	동대문구면목동 442-5	조창규
6	442-6	"	"	①19.50 ②16	35.50	" " 442-6	하성운
7	469-1	외국인 와유 조계	73.7.21	25.04	25.04	" " 469-1	최용
8	469-2	"	70.7.20	17.19	17.89	종로구신문로2가1-27	김승동
9	469-5	"	68.11.14	14.50	14.50	동대문구면목동 469-5	김효남
10	467-7	"	74.6.28	20.54	20.54	" " 469-7	박용예
11	505-4	"	70.9.7	26.89	3.71	" " 505-4	박용석
12	505-5	"	70.11.10	18.37	9.43	" " 505-5	박인순
13	505-6	"	70.9.7	18.03	12.79	" " 505-6	최덕재
14	506-11	"	70.6.30	15.63	15.63	경북대천군중앙면미광리189	이동희
15	507-14	"	76.7.21	29.01	13.11	동대문구면목동 507-14	이봉재
16	507-16	"	70.12.6	18.42	16.41	" " 507-15	유영근
17	507-16	"	70.11.30	17.34	17.34	" " 507-16	박명수
18	507-11	"	71.3.18	20.83	2.41	" " 507-11	정병업

지상 275.38 지하 17.22 계 292.60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4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영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중(아파트지구) 일부 환지에정기에 내하여 환지계획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에게 공람 시킨다.
- 환지계획변경 조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1. 4. .

서울특별시장

- 환지계획변경내역 -

- 사업명: 영동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 변경면적: 7,251평
- 변경위치: 강남구 반포동 311-3의 53필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5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
예정지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6 호 (81.1.16) 로 환지계획변경공람 공고한 영동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전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건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 하였기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기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 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공고로 갈음한다.

1981. 4. 10

서울특별시장

4. 품 목

허가번호	허가일자	규격번호	품 명	종류·등급
제 185 호	80. 7. 1	KSC 3101	전기용 연동선	진종류
186	"	" 3102	" 경동선	"
187	"	" 3103	" 일동연선	"
188	"	" 3104	" 경동연선	"
1319	"	" 3111	" 경알루미늄선	"

- 환지예정지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영동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 9,040 평
 -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서초동 106-5 외 43 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6 호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허가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1.4.11

서울특별시장

1. 제조업자명 : 금강전선(주)
2.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8
3. 대표자 : 오 은 수

38-32		제 834 호		시		보		1981. 4. 15	
허가번호	허가일자	규격번호	품명	종류·등급					
1106	80. 7. 1	KS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진종류					
1107	"	"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					
464	"	" 3302	600 V 비닐전선	"					
465	"	" 3304	기구용 비닐 코오드	"					
513	"	" 3306	8자형 옥외 전파선	"					
512	"	" 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466	"	" 33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5. 취소사유: 폐업 (자진반납)

6. 취소일자: 1981. 4. 11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7 호

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행정처분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1항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됨으로

1981. 4.

서울특별시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적용법조	비고
140	효창공업	홍성업	구로685	무단유포업 (소재지불명) 및 법정보고미제출	허가 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3조 제3항및 5항	
130	대원보일러	김제탁	구로954	"	"	"	
179	신신공업사	정기완	독산612-2	"	"	"	
101	우선열기	이순억	독산산164-5	"	"	"	
158	동광기업사	노항희	가리봉318-1	"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98 호 (71.4.7) 로

시설결정 및 서울제 고시 제 1 호 (74.1.11) 제 92 호 (79.2.28) 로 지적 고시된 구로구 독산동-관악구 시립동간의 남곡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관의 공람에 공고하고자 공고함.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

1981.4.13
서울특별시
공람개요

1. 사업시행위치 : 구로구독산동 103의가 ~ 관악구신림동 1477의 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곡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도로포장 $b = 20m$ $L = 1038m$
 $A = 158a$
나. 하수도시설 $D = 600-900mm$ $L = 1303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81.9.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다음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인 주소 : 다음

토 지 조 서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관악구신림동	산122-13	임야	312	서대문구홍은동 177-14	조천석	
2	"	산201+6	"	496	동작구노량진동 112-162	김병만	
3	"	산202-5	"	587	종로구해화동 20-21	김병철	

◎ 서울특별시공고제 109 호

도시계획사업 (구로공단종합복지관)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19 호(81.4.9)로 공시된 구로공단 종합복지관 부지개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관인에게 공람시키고자 이에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3.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서울특별시

- | | |
|--|---|
| <p>1. 사업시행위치 :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하안리 140번지 외 52 필지</p> <p>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 구로공단종합복지관)</p> <p>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p> | <p>4. 사업시행면적 : 58,300(17,666.7평)</p> <p>5. 사업기공 및 준공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공예정 : 81. 5.20 ○ 준공예정 : 82. 3.10 <p>6. 사용 또는 수용할 계산의소재지 : 다음</p> <p>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 다음</p> |
|--|---|

토 지 조 서

소 재 지	분할지적 (수용대상)			소 주 소	유 자 성 명	소유자의외의관계인
	지 번	지 목	지적(㎡)			
시흥군소하읍하안리	733	전	225	시유지 (매입)	시유지 (매입)	
"	734-1	답	1,570	"	"	
"	734-2	"	2,327	"	"	
"	734-3	"	1,684	"	"	
"	735	전	780	"	"	
"	737	"	600	"	"	
"	739	"	1,121	"	"	
"	740-3	"	288	"	"	
"	741	"	1,061	"	"	
"	741-1	"	288	"	"	
"	742	"	2,489	"	"	
"	777	"	195	"	"	
"	783-2	답	3,696	"	"	
"	783-3	"	1,997	"	"	
"	784	"	2,102	"	"	
"	785	전	496	"	"	
"	786	"	826	"	"	
"	787	"	793	"	"	
"	788	"	1,421	"	"	
"	789-1	"	856	"	"	

소재지	불활지석 (수용대상)			소유자		소유자의 의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시흥군소하읍하암리	789-2	전	1,174	시유지(매입)	시유지(매입)	
"	790	"	655	"	"	
"	산10-2	임	694	"	"	
"	산10-3	"	496	"	"	
"	732	답	1,677	"	"	
"	734-4	"	107	"	"	
"	736-1	전	400	"	"	
"	738-2	"	522	"	"	
"	740	"	1,782	"	"	
"	775	"	180	"	"	
"	776	답	1,859	"	"	
"	778-2	전	150	"	"	
"	779-2	"	207	"	"	
"	791	"	236	"	"	
"	793-2	"	530	"	"	
"	794-2	"	160	"	"	
"	산9-3	임	921	"	"	
"	산19	"	400	"	"	
"	736	전	2,014	"	"	
"	738	"	900	"	"	
"	738-1	"	853	"	"	
"	738-3	"	595	"	"	
"	740-1	"	664	"	"	
"	740-2	"	425	"	"	
"	743	"	471	"	"	
"	744-2	"	100	"	"	
"	산9-1	임	9,414	"	"	
"	산10-1	"	4,857	"	"	
"	산14-3	"	800	"	"	

소재지	분관지서 (수용대상)		소유자		소유자의 의견제언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서용군소하읍하안리	731-2	담	91 칠산리산 39	지산주씨종질씨	
"	783-5	"	66 칠산리 507	장화순	
"	산9-2	임	397 노은사리 216	정춘화	
"	상24-6	"	26 상도동 134-11	윤상일	
계	53필지		58,300 (17,666.7평)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1 호

K8 표시정지처분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 5 표시정지처분하인
기 동업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1. 4. 4.
서울특별시 시장

취가번호 새 1447 호
취가일자 1977.5.4
제조업체명 서울화학공업(주)
대표자 허철
규격번호 5317
종 명 조합페인트, 백색

종류및등급 1종
처분기간 처분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일자 81.4.
처분사유 규격기준미달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3 호

건설업 (조경식재및 시설물단종
공사) 면허취소 공고

건설업법 제 38 조제 1 항 제 5 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조경식재및 시설물단종공사) 면허를 취소하였음을 공고 한다.

1981. 4. 14
서울특별시 시장 박영수

가. 취소업체명단 : 다음
나. 취소일자 : 81.4.14

취 소 업 체 명 단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취소업종및면허번호	
			식재단종 공사	시설물단종 공사
신 구 산 업 사	이종익	종로구청진동 230	서울 21-31	
내 지 녹 화 산 업	유자열	종로구관철동 18-8 삼영빌딩 501 호	21-25	서울 22-18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취소업종및면허번호	
			식재단종 공 사업	시설물단종 공 사업
삼 산 조 경	최찬일	중구다동 93-2	서울 21-36	서울 22-27
삼 묘 조 경 건 설	백육희	관악구봉천 7 동 397서양빌딩1층	• 21-41	
아 름 조 경	이광우	강남구학동삼 16-61	• 21-28	
미 조 기 업	김택주	마포구중동 37-3		• 22-21
한국원에개발(주)	민윤재	성북구동선동 1가 1-1		• 22-20
삼 일 조 경	박부찬	동대 문구중화동 301-28	• 21-25	• 22-19
맥림조정기업사	윤대수	용산구문배동 24-4	• 21-30	• 22-22
제 립 원	이재민	강남구역삼동 451-2	• 21-19	
삼 미 사	조영숙	중구신당동 217-91 홍인상가 3층 16호	• 21-22	• 22-14
홍 암 산 업	이윤경	중구남대문로 5가 251	• 21-10	
상 립 농 원	조호제	중구회현동 1가 202	• 21-37	
해 능 농 원	이동규	중구신당동 106-8	• 21-15	• 22-11
영 산 조 경 (주)	이한성	중구봉래동 1가 132-6	• 21-40	
신 일 농 원	주필수	• 65-10	• 21-33	• 22-24

사 령

◎ 1981.4.10

총 무 과 정 락 길
지 방 동 신 기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 1981.4.13

민 방 위 과 장 박 의 중
서 기 관

기획조정실 근무

기 획 조 정 실
제 5 기획조정관실 신 동 식
서 기 관

민방위국 민방위과장

대 류

○ 1981.4.14

새마을사업과 이종권
지방행정주사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 1981.4.18

동작구신대방 2동 노경선
지방행정저기보

경상남도교육위원의 견학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 1981.4.17

정명	간명사항	원부서	직급
신금주	내무국(사회정화추진요원)	동대문구 시민봉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준상	동대문구	강동구 건설관리국장	,
강돈수	강동구	내무국	,
고용국	예산 2 담당관 예산관리제자	예산 2 담당관 예산 1 제장	,
신동우	, 예산운영 제장	, 예산 2 제장	,
김영수	업무파에 산계장 직대 (지방행정사무관)	노동위원회사무국장	행정사무관
허옥	지하철운영사업소	도시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장